

제1부 언론관련판결 분석

제1장 분석목적 및 과제, 분석방법

제2장 소송제기 현황

제3장 재판 결과

제4장 손해배상청구사건

제5장 정정보도 및 반론보도청구사건

제6장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과
법원 판결 비교



제 1 장

분석목적 및 과제, 분석방법

1. 분석목적

언론중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그 동안 언론보도로 인한 명예훼손 등 인격권 침해 소송 사건에 대한 법원의 판결을 수집하여 매년 <국내언론관계판결집>을 발간하여 왔다. 그러나 판결문 자체로는 언론 분쟁에 관한 판결의 흐름을 파악하기가 용이하지 않았다.

이에 위원회는 2008년에 3년간(2005~2007년)의 언론분쟁에 관한 판결을 대상으로 소송현황, 주요 쟁점별 실시내용 등을 분석하여 <2005~2007년도 언론소송 판결분석>을 발간한 바 있다. 그리고 이에 대한 후속 연구로 2009년에는 <2008년도 언론관련판결 분석보고서>를, 올해에는 <2009년도 언론관련판결 분석보고서>를 발간하게 되었다.

이러한 분석은 위원회의 언론분쟁사건 처리에 유용한 지침을 제공해 줄 것이다. 그리고 일선의 언론종사자들에게는 취재 및 보도의 가이드라인을 설정하는데 도움을 주고, 언론소송을 연구하는 언론학자들에게는 연구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2. 분석과제

가. 언론보도로 인한 인격권침해 관련 소송 제기현황

2009년도 소송 제기 현황과 관련해서는 심급별 소송빈도, 상소율, 청구별 소송빈도, 침해유형별 소송빈도, 매체유형별 소송빈도, 보도유형별 소송빈도, 사건 피고구성, 매체별 피고구성 등에 대해 분석하고자 했다.

나. 언론보도로 인한 인격권침해 관련 소송 처리결과

2009년도 소송 처리결과와 관련해서는 심급별 처리결과, 상소심의 원심판결 유지여부, 청구별 처리결과,

침해유형별 처리결과, 원고유형별 처리결과, 매체유형별 처리결과, 보도유형별 처리결과, 손해배상청구사건의 청구액 및 인용액, 인용액 분포, 침해유형별 인용액, 원고유형별 승소율 및 인용액, 매체유형별 원고승소율 및 인용액, 공동 피소된 언론인에 대한 판결결과, 손해배상청구 기각사유, 정정보도 및 반론보도청구의 기각사유, 판결주문에 따른 보도문의 형식 등에 대해 분석하고자 했다.

다.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과 법원의 판결 비교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과 법원의 판결 비교와 관련해서는 2009년도 소송사건 중 위원회 조정을 거친 소송사건의 비율, 조정을 거친 사건의 위원회 조정결과와 법원판결 결과 비교, 손해배상청구사건의 위원회 조정액과 법원 인용액 비교 등에 대해 분석하고자 했다.

3. 분석방법

가. 분석대상

**2009년도 언론 관련 분석대상 판결은 민사 108건으로
매체별 빈도는 128건, 청구별 빈도는 183건**

1) 분석대상은 2009년 1월 1일부터 2009년 12월 31일까지 1년간 우리나라 각급 법원에서 선고한 판결 중 언론등의 보도 또는 매개로 인한 인격권침해를 이유로 언론사나 인터넷뉴스사업자, 언론인을 상대로 제기된 민사소송 판결이다.

2) ‘언론등’이란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이하 “언론중재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 언론(방송·정기간행물·뉴스통신·인터넷신문, 인터넷뉴스서비스(포털) 및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IPTV)을 뜻한다. 참고로 인터넷뉴스서비스는 2009년 8월 7일 시행된 언론중재법에 따라 언론조정 및 중재의 대상이 되었다.

3) 판결 분석은 확정된 판결만을 대상으로 하거나 1심 사건과 그 상소심 판결만을 대상으로 하기도 한다. 그러나 본 분석의 경우 위 1년 기간을 기준으로 이 기간 동안에 수집된 모든 언론소송 판결을 대상으로 했다. 이는 분석대상 판결들이 심급에 관계없이 모두 개별사건으로서의 지위를 가짐을 의미한다. 따라서, 본 분석의 대상에는 위 기간 중에 상소심 없이 하급심만 존재하거나 하급심 없이 상소심만 존재하는 판결도 포함되어 있다.

4) 정정보도, 반론보도, 추후보도, 손해배상, 기사삭제 등을 구하는 청구와 배포나 방영금지 등을 구하는 신청, 그리고 이와 병합된 사건만을 분석대상으로 삼았다.

5) 이상과 같은 조건을 만족하는 판결을 법원도서관에서 검색, 수집한 결과 분석대상 판결은 총 108건이다.

6) 위 108건의 판결 중 여러 언론사가 공동으로 피소된 사건의 경우, 언론사별로 보도내용이나 형식 등이 다르고 이에 따라 법원의 인용여부, 인용내용, 손해배상 청구액 및 인용액 등이 달라질 수 있다. 이러한 점을 감안하여 하나의 소송사건을 피소된 언론사별로 각각을 나누었다. 그 결과 얻어진 분석대상 판결의 매체별 빈도는 128건이다.

7) 한편, 위 128건은 정정보도·손해배상청구와 같이 여러 건의 청구가 함께 제기된 경우가 다수이다. 따라서 각각의 개별 청구권별 처리결과를 집계하거나, 위원회 조정을 거친 소송사건의 비율을 산정하는 경우에는 위 128건을 청구권별로 환산한 183건이 모수가 된다.

나. 자료수집 방법

법원도서관에서 판결문 검색 후, 판결문 제공신청 제도 이용

법원은 2006년 5월 1일부터 법원이 보유하고 있는 판결문을 데이터베이스화하여 판결문을 검색·열람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판결의 수집은 대법원 법원도서관에 마련된 판결문 검색·열람 특별창구를 이용하여 검색된 판결을 대상으로 했다. 그러나 화해권고결정, 강제조정, 조정성립 등은 검색이 되지 않아 수집 및 분석대상에서 제외되었다.

판결에 관한 검색어는 ①정정보도 ②반론보도 ③추후보도 ④보도&명예훼손&손해배상 ⑤보도&초상권 ⑥보도&성명권 ⑦보도&음성권 ⑧보도&사생활 등으로 했다. 판결문 수집은 검색 후 법원의 판결문 제공제도를 이용했다.

다. 분석항목

분 석 목 록	구체적 분석 항목	
일 반 사 항	01. 판결번호 02. 선고일자 03. 법 원 명	04. 심 급 05. 청구의 종류 06. 침해유형
원 고	07. 원 고 명 08. 대표 원고 분류	09. 공적인물 분류
피 고	10. 사건 피고명 11. 사건 피고구성 12. 매 체 명	13. 매체별 피고구성 14. 피고 언론인 개인 승소 여부
매 체 분 류	15. 매체분류	
보도내용 분류	16. 보도내용 분류 16-1. 방송 외 기사유형	16-2. 방송 프로그램 유형
청 구 별 처 리 결 과	17. 청구별 처리결과 17-1. 정정보도 17-2. 반론보도	17-3. 손해배상 17-4. 기사삭제 17-5. 보도금지
원 · 상 고 심 결 과	18. 심급별 결과 18-1. 1심 18-2. 항소심	18-3. 상고심 18-4. 파기환송심
기 타	19. 원고 원심유지 여부 20. 조정청구명	21. 조정신청 결과 22. 직권조정 결정액
손 해 배 상	23. 사건 청구액 24. 사건 인용액 25. 매체별 청구액	26. 매체별 인용액 27. 손해배상 기각사유
정 정 보 도	28. 정정 기각사유	29. 정정 각하사유
반 론 보 도	30. 반론 기각사유	31. 반론 각하사유
판결주문에 따른 보 도 형 식	32. 보도의 인용 여부 33. 보도지면(프로그램) 34. 보도위치	35. 보도제목 36. 보도본문 길이

라. 코딩방법

1) 대표 원고 분류

① 원고가 다수인 사건 중 개인 및 단체가 청구한 경우에는 개인으로 하지 않고 단체로 분류했다.

② 공인이란 고위 공직자와 공적 인물을 말한다. 판결에서 공직자나 공적 인물이라고 직접 언급하거나 암시한 경우뿐만 아니라 그 동안의 판례나 학설에서 꾸준히 공인으로 분류한 인물을 이 범주에 포함시켰다.

③ 일반인과 공인이 신청한 경우 공인으로 분류했다.

④ 공인여부 판단에서는 현직뿐만 아니라 전직도 고려했다. 전직이라 함은 언론사가 원고의 재직 당시 일어난 사건에 대해 보도를 했지만 현재는 원고가 그 직을 그만둔 경우를 말한다.

⑤ 공직자는 판결에서 언급된 경우나 「공직자윤리법」제3조 상의 공직자를 말한다. 예) 국무위원 · 국회의원 등 정무직 공무원, 지방의회의원, 4급 이상의 공무원, 법관 및 검사, 대령 이상의 장교 등

2) 공적 인물 분류

공적 인물이란 연예인 · 정치인 · 기업가 · 언론인 등 사회적으로 저명한 인물이거나 단체의 대표 등으로서 그 활동이 공적 관심사인 사람을 말한다.

3) 침해유형

① 신용훼손에서의 신용이란 엄격한 의미로는 지불능력과 지불의사에 대한 사회적 신뢰를 말한다. 그러나 이러한 개념을 조금 완화하여 기업이 보도로 인하여 매출에 직접적인 타격을 입는 경우도 신용훼손으로 코딩하였다.

② 모욕은 구체적인 사실의 적시가 없으므로 명예훼손과는 다른 불법행위를 구성한다고 판단하여, 명예훼손이 아닌 기타로 분류했다.

4) 매체명

① 청구취지에 오프라인과 별도로 언론사닷컴을 상대로 한 청구(기사삭제 등)가 있거나 오프라인과 함께 언론사닷컴 기사에 의한 피해를 주장하는 경우에는 언론사닷컴을 별도의 매체로 보고 코딩하였다.

예) 사건 피고가 ○○신문사 단독이나, 청구취지에 ○○신문, ○○신문 홈페이지를 상대로 각 청구를 하였다면 2개의 매체로 각 코딩

② 피고가 언론인 개인인 경우 언론인 소속 매체명을 기재했다.

5) 사건 피고구성

① 사건을 매체별로 분류하지 않은 108건의 판결을 대상으로 공동 피소된 피고의 구성을 파악하고자 하는 항목이다.

② 사건 피고구성은 언론사, 언론인, 언론사 다수, 언론인 다수, 비언론(제보자나 기고자 등) 간의 다양한 조합이다.

6) 매체별 피고구성

- ① 매체별로 소송에 연루된 언론인들을 직위별로 파악하고자 하는 항목이다.
- ② 피고의 직위가 대표이사나 부장 등이라도 기사를 직접 쓴 사람이라면 담당으로 분류했다.

7) 언론인 개인에 대한 판결 결과

언론인이라 함은 피고 중 언론사가 아닌 언론사 대표, 기자, 프로듀서 등을 말한다.

8) 방송 분류

- ① 중앙방송의 지역권 뉴스는 지방방송으로 분류했다.
 - ② 고발성격이 짙은 프로그램만을 시사·고발로 분류했다.
- 예) PD수첩, 시사매거진 2580, 그것이 알고 싶다, 추적 60분, 뉴스 후 등
- ③ 뉴스 프로그램 내의 고발 코너(현장추적 등)는 뉴스로 분류했다.
 - ④「KBS 스페셜」,「미디어 비평」등은 교양·정보로 분류했다.

9) 청구별 처리결과

① 원고 일부승소라 함은 손해배상액 또는 정정보도문 등이 청구(항소)취지보다 감액 또는 감축된 경우, 여러 청구 중에 일부의 청구만 인용된 경우 즉, 1개의 사건에서 손해배상과 정정보도를 청구하여 손해배상만 인용되고 정정보도는 기각된 경우를 말한다.

② 항소심의 경우 그 처리결과는 항소기각 또는 원심취소의 형태로 나타나고, 상고심의 경우 그 처리결과는 상고기각이나 원심파기의 형태로 나타나지만 결과적으로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는 것이라면 원고 승소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것이라면 원고 패소로 분류했다.

10) 원고 원심유지 여부

항소심의 원심은 1심, 상고심의 원심은 항소심을 말한다. 환송후심의 경우는 제외했다.

11) 매체별 청구액(인용액)

① 피고가 다수인 경우 청구취지액(주문 인용액)을 매체별로 구분하여 동일 매체에 해당하는 청구액(인용액)을 기재하되, 매체별로 각자(연대하여) 지급할 것을 청구(인용)한 경우에는 매체별로 동일한 금액을 각 기재했다.

② 피고가 언론인인 경우 소속 매체에 대한 청구액(인용액)에 합산하였다.

③ 항소심과 상고심도 1심의 청구취지액을 기재하되, 항소심에서 청구취지액이 변경된 경우 그 변경된 금액을 기재하였다.



제2장

소송제기 현황

1. 심급별 소송빈도

1심 61.1%, 2심 22.2%, 상고심 14.8%

분석대상 판결을 대상으로 심급별 빈도를 살펴보니, 1심이 66건(61.1%), 항소심이 24건(22.2%), 상고심이 16건(14.8%), 대법원의 원심파기에 따른 환송후심이 2건(1.9%)으로 각각 나타났다.

〈표 1-1〉 심급별 빈도

심 급	빈 도	비 율(%)
1 심	66	61.1
항 소 심	24	22.2
상 고 심	16	14.8
환송후심	2	1.9
합 계	108	100

2. 상소율

항소율 66.7%, 상고율 45.8%

1심 사건과 항소심 사건을 대상으로 이후에 원고 또는 피고가 상소했는지의 여부를 조사해 그 비율을 살펴보았다. 1심 판결 66건 중 판결에 불복해 항소한 사건은 44건으로 항소율은 66.7%로 비교적 높게 나타났다. 그리고 항소심 판결 24건 중 항소심 판결에 불복해 원고 또는 피고가 대법원에 상고한 사건은 11건으로 상고율은 45.8%로 나타났다.

〈표 1-2〉 상소율

심 급	빈 도	상소빈도	상소율(%)
1 심	66	44	66.7
항소심	24	11	45.8

3. 청구별 소송빈도

원고는 손해배상청구와 정정보도청구를 선호

원고가 구하는 청구 내용을 통해 이들이 선호하는 피해구제방법이 무엇인지에 대해 살펴보았다. 그 결과, 손해배상을 단독으로 청구한 경우가 75건(58.6%)으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 정정보도와 손해배상을 함께 청구한 경우가 37건(28.9%)으로 나타났다.

정정·손배청구와 같이 한 사건에 여러 청구가 함께 제기된 사건을 각 청구권별로 나누어 이를 합산해 본 결과, 손해배상청구 121건(66.1%), 정정보도청구 49건(26.8%), 반론보도청구 7건(3.8%)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이상을 통해 피해구제방법으로 손해배상청구와 정정보도청구가 선호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1-3〉 청구별 빈도

청 구 명	빈 도	비 율(%)
정 정	3	2.3
정정/반론	3	2.3
정정/반론/손해배상	3	2.3
정정/손해배상	37	28.9
정정/손해배상/기사삭제	1	0.8
정정/손해배상/보도금지	2	1.6
반 론	1	0.8
추후/손해배상	1	0.8
손해배상	75	58.6
손해배상/기사삭제	2	1.6
합 계	128	100

〈표 1-4〉 청구별 빈도(각 청구권별 합산)

청 구 명	빈 도	비 율(%)
정정보도	49	26.8
반론보도	7	3.8
추후보도	1	0.5
손해배상	121	66.1
기사삭제	3	1.6
보도금지	2	1.1
합 계	183	100

4. 침해유형별 소송빈도

침해유형은 명예훼손이 75.9%로 가장 많아

원고가 침해받았다고 주장하는 인격권을 기준으로 침해유형을 분류해 보았다. 그 결과, 명예훼손이 82건(75.9%)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신용훼손 6건(5.6%), 초상권/사생활 침해가 4건(3.7%) 등으로 나타났다.

침해유형이 여러 개인 경우 이를 분리하여 각각의 침해유형별로 단순빈도를 구해본 결과, 명예훼손이 88건, 초상권 침해가 10건, 사생활 침해가 9건 등이었다.

〈표 1-5〉 침해유형별 빈도

침해유형	빈도	비율(%)
명예	82	75.9
명예 / 초상	2	1.9
명예 / 음성	2	1.9
명예/초상/사생활	2	1.9
신용	6	5.6
초상 / 사생활	4	3.7
초상 / 성명	2	1.9
사생활	1	0.9
사생활 / 성명	2	1.9
저작권	2	1.9
기타	3	2.8
합계	108	100

5. 매체유형별 소송빈도

매체유형은 일간신문, 방송, 인터넷매체 순으로 나타나

소송사건을 피고 언론사별로 나눈 매체별 빈도 128건으로 매체유형을 분류해 보았다. 그 결과, 일간신문이 44건(34.4%)으로 가장 높았고, 그 다음으로 방송이 35건(27.3%)으로 나타났으며, 인터넷매체도 24건(18.8%)으로 적지 않았다. 그 외 주간신문과 월간지가 각 10건(7.8%)이었고 뉴스통신은 5건(3.9%)이었다.

일간지 중에는 중앙종합일간지가 33건(75.0%)으로 소송 빈도가 가장 높았고, 방송 중에는 중앙방송이 30건(85.7%)으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인터넷매체 중에는 독립형 인터넷신문이 12건(50.0%)이었고, 종속형 인터넷신문인 언론사닷컴이 8건

(33.3%), 인터넷뉴스서비스인 포털사이트가 4건(16.7%)이었다.

〈표 1-6〉 매체유형별 빈도

매체 유형	빈 도	비 율(%)
일 간 신 문	44	34.4
주 간 신 문	10	7.8
월 간 지	10	7.8
방 송	35	27.3
뉴스 통신	5	3.9
인 터 넷	24	18.8
합 계	128	100

〈표 1-7〉 일간지 종별 빈도

일간지 종별	빈 도	비 율(%)
중 앙 종 합	33	75.0
지 역 종 합	7	15.9
일 반 경 제	1	2.3
특 수 일 간	2	4.5
무 료 종 합	1	2.3
합 계	44	100

〈표 1-8〉 방송유형별 빈도

방송 유형	빈 도	비 율(%)
중 앙	30	85.7
지 방	1	2.9
민 방	3	8.6
케 이 블	1	2.9
합 계	35	100

〈표 1-9〉 인터넷매체 유형별 빈도

인터넷매체 유형	빈 도	비 율(%)
인 터 넷 신 문	12	50.0
언 론 사 닷 컴	8	33.3
포 털 사 이 트	4	16.7
합 계	24	100

6. 보도유형별 소송빈도

**보도유형은 방송 외 매체는 스트레이트 기사가 대부분
방송은 뉴스가 절반 가까이 차지**

방송매체 35건을 제외한 나머지 93건을 대상으로 소송을 촉발시킨 보도의 유형을 살펴보았다. 그 결과, 스트레이트 기사가 73건(78.5%)으로 대부분이었고, 스트레이트/사설이 8건(8.6%), 칼럼 7건(7.5%), 인터뷰 2건(2.2%) 등이었다.

소위 의견성 기사라 할 수 있는 사설이나 칼럼, 만평 등을 포함하고 있는 기사의 빈도를 모두 합산해본 결과 20건이었다.

한편, 피소된 방송매체 35건의 경우 문제가 된 보도유형은 뉴스가 17건(48.6%), 시사·고발프로그램이 13건(37.1%), 교양·정보와 오락이 각 2건(5.7%), 드라마가 1건(2.9%)이었다.

〈표 1-10〉 보도유형별 빈도(방송 외)

보도유형(방송 외)	빈도	비율(%)
스트레이트	73	78.5
스트레이트/사설	8	8.6
스트레이트/사설/칼럼	1	1.1
칼럼	7	7.5
칼럼/사설	1	1.1
인터뷰	2	2.2
만평	1	1.1
합계	93	100

〈표 1-11〉 방송매체의 보도유형별 빈도

보도유형(방송)	빈도	비율(%)
뉴스	17	48.6
시사·고발	13	37.1
교양·정보	2	5.7
드라마	1	2.9
오락	2	5.7
합계	35	100

7. 사건 피고구성

피고구성은 언론사 단독, 언론사/언론인 다수, 언론사/언론인 순으로 나타나

사건에서 공동으로 피소된 피고가 어떤 식으로 구성되어 있는지를 살펴보았다. 보도가 잘못되었을 경우 해당 언론사 또는 담당 기자에게만 책임을 묻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피고의 구성은 다양하게 나타났다.

사건의 피고는 언론사 단독이 37건(34.3%)으로 가장 많았으며, 그 다음으로 언론사/언론인 다수가 25건(23.1%), 언론사/언론인이 19건(17.%)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표 1-12〉 사건 피고구성

사건 피고구성	빈도	비율(%)
언론사	37	34.3
언론사/언론인	19	17.6
언론사/언론인/비언론	3	2.8
언론사/언론인 다수	25	23.1
언론사/언론인 다수/비언론	2	1.9
언론사/비언론	3	2.8
언론사 다수	5	4.6
언론사 다수/언론인	3	2.8
언론사 다수/언론인/비언론	1	0.9
언론사 다수/언론인 다수	1	0.9
언론사 다수/비언론	2	1.9
언론인	3	2.8
언론인 다수	3	2.8
언론인/비언론	1	0.9
합계	108	100

8. 매체별 피고구성

언론사와 담당 기자를 상대로 한 소송이 많아

각 사건의 피고를 언론사별로 나눈 128건을 대상으로 피고의 구성을 살펴보았다. 그 결과, 언론사 단독이 55건(43.0%)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언론사/담당이 32건(25.0%)로 나타났다.

매체별 피고구성을 직위별로 합산하여 살펴보면 언론사가 122건(50.8%)으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 담당 기자 및 프로듀서가 66건(27.5%), 대표이사 17건(7.1%), 비언론 13건(5.4%), 부장 12건(5.0%)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표 1-13〉 매체별 피고구성

매체별 피고구성	빈도	비율(%)
언론사	55	43.0
언론사/대표	1	0.8
언론사/대표/국장/담당	1	0.8
언론사/대표/국장/부장/담당	2	1.6
언론사/대표/논설/담당	2	1.6
언론사/대표/부장/담당	1	0.8
언론사/대표/담당	8	6.3
언론사/국장/부장/담당	3	2.3
언론사/국장/담당/비언론	1	0.8
언론사/부장	1	0.8
언론사/부장/담당	4	3.1
언론사/담당	32	25.0
언론사/담당/비언론	7	5.5
언론사/비언론	4	3.1
대표	1	0.8
대표/담당	1	0.8
부장/담당/기타	1	0.8
담당	2	1.6
담당/비언론	1	0.8
합계	128	100

〈표 1-14〉 매체별 피고구성(직위별 합산)

매체별 피고구성	빈도	비율(%)
언론사	122	50.8
대표이사	17	7.1
국장	7	2.9
논설	2	0.8
부장	12	5.0
담당(기자·PD)	66	27.5
비언론	13	5.4
기타	1	0.4
합계	240	100

제3장 재판 결과

1. 심급별 처리결과

원고승소율 52.8%, 원고패소율 47.2%

재판 결과에 따른 원고승소율(원고 일부승소 포함)을 산정해 본 결과, 원고승소율은 52.8%, 원고패소율은 47.2%로 집계되었다. 전체적으로 승소율이 패소율보다 5.6%p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원고의 청구취지나 항소취지의 인용정도를 살펴보면, 지울 스님이 10원을 청구한 사건을 그대로 인용한 1건을 제외하고는 나머지 모두 원고의 청구(항소) 취지를 감축 또는 감액한 것으로 나타났다.

분석대상 판결들의 심급별 원고 승소율을 살펴본 결과, 1심 사건의 경우 51.5%, 항소심 사건의 경우 50.0%, 상고심 사건의 경우 62.5%로 각각 조사되었다.

〈표 2-1〉 심급별 처리결과

심 급	처 리 결 과		계
	원고일부승	원 고 패	
1 심	34 (51.5)	32 (48.5)	66 (100)
항소심	12 (50.0)	12 (50.0)	24 (100)
상고심	10 (62.5)	6 (37.5)	16 (100)
환송후심	1 (50.0)	1 (50.0)	2 (100)
합 계	57 (52.8)	51 (47.2)	108 (100)

※ ()안의 숫자는 %

2. 상소심의 원심판결 유지여부

상소심 92.5%가 원심판결 유지

항소심 24건과 상고심 16건을 합산한 40건을 대상으로 원심판결 유지여부에 대해 조사해 보았다. 그 결과, 원고가 일부승소한 원심을 그대로 유지한 판결이 21건, 원고가 패소한 원심을 그대로 유지한 판결이 16건인 것으로 나타나 상소심 92.5%가 원심판결을 유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원고가 일부승소한 원심이 번복된 경우는 2건, 원고가 패소한 원심이 번복된 경우는 1건으로 원심판결 번복비율은 7.5%였다.

이를 심급별로 살펴보면, 항소심의 경우 원심판결 유지비율은 91.6%였고 원심판결 번복비율은 8.4%였다. 그리고 상고심의 경우 원심판결 유지비율이 93.8%였고 원심판결 번복비율은 6.3%였다.

〈표 2-2〉 상소심의 원심판결 유지여부

구 분	빈 도	원심판결 유지		원심판결 번복	
		원고승소판결 유지	원고패소판결 유지	원고승소판결 번복	원고패소판결 번복
항소심	24 (100)	11 (45.8)	11 (45.8)	1 (4.2)	1 (4.2)
상고심	16 (100)	10 (62.5)	5 (31.3)	1 (6.3)	
합 계	40 (100)	21 (52.5)	16 (40.0)	2 (5.0)	1 (2.5)
		37 (92.5)		3 (7.5)	

※ ()안의 숫자는 %

3. 청구별 처리결과

반론청구 66.7%, 정정보청구 61.2%, 손해청구 47.0% 원고승소

여러 청구가 함께 제기된 사건들을 각 청구권별로 나누어 처리결과를 조사해 보았다. 청구별 원고승소율은 추후보도를 제외하면 반론보도청구가 66.7%로 가장 높았고, 그 다음으로 정정보도청구가 61.2%로 나타났다으며, 손해배상청구가 47.0%로 비교적 낮았다.

손해배상청구의 원고패소율은 52.1%로 정정보도청구의 경우보다 13.3%p, 반론보도청구보다 18.8%p 높았다.

참고로 반론보도청구사건은 총 7건이었으나, 그 중 1건은 주위적 청구인 정정보도청구가 인용되어 예비적 청구인 반론보도청구에 대해 법원의 심리가 이루어지지 않아 분석대상에서 제외하였다.¹⁾

〈표 2-3〉 청구별 결과

청 구 명	처 리 결 과		계
	원고일부승	원 고 패	
정정보도	30 (61.2)	19 (38.8)	49 (100)
반론보도	4 (66.7)	2 (33.3)	6 (100)
추후보도	1 (100.0)		1 (100)
손해배상	58 (47.9)	63 (52.1)	121 (100)
기사삭제	1 (33.3)	2 (66.7)	3 (100)
보도금지		2 (100.0)	2 (100)
합 계	94 (51.6)	88 (48.4)	182 (100)

※ ()안의 숫자는 %

1) 부산고등법원 2009. 12. 3. 선고 2009나9003판결

4. 침해유형별 처리결과

명예훼손 단독의 경우 원고승소율이 48.8%로 절반에 가까워

원고가 주장하는 침해유형별 원고 승소율을 집계한 결과, 명예훼손 단독의 경우 절반보다 조금 낮은 48.8%였고, 신용훼손 단독이 50.0%로 나타났다. 그 외에 명예훼손과 음성권이 함께 침해된 경우, 명예와 초상권 및 사생활이 함께 침해된 경우, 사생활 단독 침해의 경우, 저작권 단독 침해의 경우 등이 100%의 원고 승소율을 나타냈지만 빈도가 너무 적어 별다른 의미를 부여하기 어렵다.

초상권 침해를 인정한 사례로는 ADHD(주의력결핍 과잉행동장애) 증상을 가진 아이들의 모습이 담긴 방송자료를 폐기하기로 한 약정을 위반하여 다시 방송한 사건²⁾, 인터뷰 거절의사를 표시하였음에도 옥션 정보유출사건 집단소송을 대리하는 변호사의 초상을 공개한 사건³⁾ 등이 있었다.

반면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하면서 여론조사 회사에서 근무하는 장면을 보도한 사건⁴⁾, 공공장소에서 이루어진 집회·시위 현장에서의 사진을 촬영하여 보도한 사건⁵⁾ 등에서는 초상권 침해를 부정하였다.

〈표 2-4〉 침해유형별 결과

침해 유형	처리 결과		계
	원고일부승	원고 패	
명예	40 (48.8)	42 (51.2)	82 (100)
명예/음성	2 (100.0)		2 (100)
명예/초상	1 (50.0)	1 (50.0)	2 (100)
명예/초상/사생활	2 (100.0)		2 (100)
신용	3 (50.0)	3 (50.0)	6 (100)
초상/사생활	2 (50.0)	2 (50.0)	4 (100)
초상/성명	1 (50.0)	1 (50.0)	2 (100)
사생활	1 (100.0)		1 (100)
사생활/성명	1 (50.0)	1 (50.0)	2 (100)
저작권	2 (100.0)		2 (100)
기타	2 (66.7)	1 (33.3)	3 (100)
합계	57 (52.8)	51 (47.2)	108 (100)

※ ()안의 숫자는 %

2) 서울남부지방법원 2009. 5. 19. 선고 2009가합311 판결

3) 서울동부지방법원 2009. 11. 24. 선고 2008가단62527 판결

4) 서울중앙지방법원 2009. 5. 12. 선고 2009나2155 판결, 대법원 2009. 8. 20. 선고 2009다41038 판결

5) 서울중앙지방법원 2009. 10. 14. 선고 2009가합41071 판결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한다고 본 사례로는 헌법소원을 제기한 일반인의 실명과 주소를 게재한 사건⁶⁾, 원고의 승낙 범위를 초과하여 바람둥이라는 자막과 함께 이름, 나이, 사진을 공개한 사건⁷⁾ 등이 있었다.

5. 원고유형별 처리결과

공직자 승소율이 71.4%로 높게 나타나

10건 이상의 빈도를 보인 사건 중 원고유형별 승소율을 살펴보면, 공직자가 71.4%로 가장 높았고 일반인이 51.2%였으며, 공적인물은 41.2%로 낮게 나타났다. 그 외에 기업이 66.7%였으며, 나머지 원고 유형들은 빈도가 낮아 원고 승소율이 높거나 낮더라도 의미를 부여하기 어려워 보인다.

법원은 공인 등 공적인 영역에 속하는 사안(공직자의 도덕성·청렴성이나 그 업무처리의 정당성 등)에 관한 보도에 대해서는 국민의 감시와 비판의 대상이 되어야 하므로 쉽게 제한되지 않는다고 밝히고 있으나, 그렇다 하더라도 정당한 언론활동의 범위를 벗어나 악의적이거나 심히 경솔한 공격으로서 현저히 상당성을 잃으면 위법하다고 판단하였다.⁸⁾

〈표 2-5〉 원고유형별 결과

원고유형	처 리 결 과		계
	원고일부승	원 고 패	
공 직 자	10 (71.4)	4 (28.6)	14 (100)
공적인물	7 (41.2)	10 (58.8)	17 (100)
일 반 인	22 (51.2)	21 (48.8)	43 (100)
국가기관	1 (100.0)		1 (100)
공공단체	1 (50.0)	1 (50.0)	2 (100)
정 당	1 (100.0)		1 (100)
일반단체	2 (33.3)	4 (66.7)	6 (100)
시민단체		3 (100.0)	3 (100)
종교단체		1 (100.0)	1 (100)
기 업	6 (66.7)	3 (33.3)	9 (100)
언 론 사	4 (66.7)	2 (33.3)	6 (100)
교육기관	3 (60.0)	2 (40.0)	5 (100)
합 계	57 (52.8)	51 (47.2)	108 (100)

※ ()안의 숫자는 %

6) 서울중앙지방법원 2009. 1. 16. 선고 2007가소297921 판결

7) 서울서부지방법원 2009. 4. 21. 선고 2007가단83352 판결

8) 서울고등법원 2009. 9. 30. 선고 2008나103825 판결

〈표 2-6〉 공적인물에 대한 결과

공적인물 유형	처 리 결 과		계
	원고일부승	원 고 패	
정치인	1 (33.3)	2 (66.7)	3 (100)
언론인		1 (100.0)	1 (100)
기업가	2 (100.0)		2 (100)
기 타	4 (36.4)	7 (63.6)	11 (100)
합 계	7 (41.2)	10 (58.8)	17 (100)

※ ()안의 숫자는 %

6. 매체유형별 처리결과

**인터넷매체, 일간신문을 상대로 한 사건의 원고승소율은 비교적 높았으나
방송을 상대로 한 사건의 원고승소율은 비교적 낮게 나타나**

매체유형에 따른 처리결과를 살펴본 결과, 인터넷매체를 상대로 한 사건에서 원고 승소율이 70.8%로 나타나 가장 높았다. 이어 일간신문이 65.9%, 월간지가 60.0%로 나타나 비교적 높은 원고 승소율을 보였다. 이에 비해 방송은 31.4%, 주간신문은 30.0%, 뉴스통신은 40.0%로 원고승소율이 낮았다.

일간지 중에는 중앙종합일간지(66.7%)가 지역종합일간지(57.1%)보다 원고승소율이 9.6%p 높았다. 그리고 방송은 중앙방송(30.0%)과 지역민방(33.3%) 둘 다 원고승소율이 낮았다. 그 외 인터넷매체로 인터넷신문(66.7%), 언론사닷컴(62.5%), 포털사이트(100.0%)는 전반적으로 원고승소율이 높았다.

〈표 2-7〉 매체유형별 처리결과

매체유형	처 리 결 과		계
	원고일부승	원 고 패	
일 간	29 (65.9)	15 (34.1)	44 (100)
주 간	3 (30.0)	7 (70.0)	10 (100)
월 간	6 (60.0)	4 (40.0)	10 (100)
방 송	11 (31.4)	24 (68.6)	35 (100)
뉴스통신	2 (40.0)	3 (60.0)	5 (100)
인 터 넷	17 (70.8)	7 (29.2)	24 (100)
합 계	68 (53.1)	60 (46.9)	128 (100)

※ ()안의 숫자는 %

〈표 2-8〉 일간지 처리결과

일간지종별	처 리 결 과		계
	원고일부승	원 고 패	
중앙종합	22 (66.7)	11 (33.3)	33 (100)
지역종합	4 (57.1)	3 (42.9)	7 (100)
일반경제	1 (100.0)		1 (100)
특수일간	1 (50.0)	1 (50.0)	2 (100)
무료종합	1 (100.0)		1 (100)
합 계	29 (65.9)	15 (34.1)	44 (100)

※ ()안의 숫자는 %

〈표 2-9〉 방송 처리결과

방송유형	처 리 결 과		계
	원고일부승	원 고 패	
중 앙	9 (30.0)	21 (70.0)	30 (100)
지 방		1 (100.0)	1 (100)
민 방	1 (33.3)	2 (66.7)	3 (100)
케이블	1 (100.0)		1 (100)
합 계	11 (31.4)	24 (68.6)	35 (100)

※ ()안의 숫자는 %

〈표 2-10〉 인터넷매체 처리결과

인터넷매체 유형	처 리 결 과		계
	원고일부승	원 고 패	
인터넷신문	8 (66.7)	4 (33.3)	12 (100)
언론사닷컴	5 (62.5)	3 (37.5)	8 (100)
포털사이트	4 (100.0)		4 (100)
합 계	17 (70.8)	7 (29.2)	24 (100)

※ ()안의 숫자는 %

7. 보도유형별 처리결과

스트레이트 기사 대상 원고승소율은 64.4%, 방송 뉴스는 29.4%

소제기 대상기사의 보도유형에 따른 처리결과를 살펴본 결과, 보도유형 중 가장 높은 빈도를 보이는 스

트레이트 기사 대상 원고승소율이 64.4%로 비교적 높았다. 그러나 방송매체는 뉴스가 29.4%, 시사·고발 프로그램이 30.8%로 전반적으로 낮게 나타났다.

〈표 2-11〉 보도유형별 처리결과(방송 외)

보도유형(방송 외)	처 리 결 과		계
	원고일부승	원 고 패	
스트레이트	47 (64.4)	26 (35.6)	73 (100)
스트레이트/사설	3 (37.5)	5 (62.5)	8 (100)
스트레이트/사설/칼럼	1 (100.0)		1 (100)
칼 럼	3 (42.9)	4 (57.1)	7 (100)
칼럼/사설	1 (100.0)		1 (100)
인터뷰	2 (100.0)		2 (100)
만 평		1 (100.0)	1 (100)
합 계	57 (61.3)	36 (38.7)	93 (100)

※ ()안의 숫자는 %

〈표 2-12〉 방송매체의 보도유형별 처리결과

보도유형(방송)	처 리 결 과		계
	원고일부승	원 고 패	
뉴 스	5 (29.4)	12 (70.6)	17 (100)
시사·고발	4 (30.8)	9 (69.2)	13 (100)
교양·정보	1 (50.0)	1 (50.0)	2 (100)
드 라 마		1 (100.0)	1 (100)
오 락	1 (50.0)	1 (50.0)	2 (100)
합 계	11 (31.4)	24 (68.6)	35 (100)

※ ()안의 숫자는 %



제4장

손해배상청구사건

소송건수를 언론사별로 나눈 후에, 이를 다시 청구별로 분류하여 손해배상청구를 합산하면 121건이다. 여기서 대법원에서 파기환송한 6건은 액수 등을 코딩하기가 부적절하여 제외하였으며, 그 결과 분석대상은 115건이 되었다. 이 115건을 대상으로 원고승소율과 청구액 및 인용액, 함께 피소된 언론인에 대한 판결 결과, 손해배상청구 기각사유 등을 살펴보았다.

1. 처리결과

손해배상청구사건의 원고승소율은 47.0%

손해배상청구사건 115건 중 원고 일부승소한 사건은 54건으로 원고승소율은 47.0%로 나타났다.

〈표 3-1〉 손해배상청구 처리결과

청구빈도	처 리 결 과	
	원고일부승	원 고 패
115 (100.0)	54 (47.0)	61 (53.0)

※ ()안의 숫자는 %

2. 청구액

손해배상 청구액 평균은 2억 4,773만원, 중앙액은 1억원

원고가 손해배상청구를 하면서 요구한 손해배상청구액의 다소를 살펴보았다. 빈도가 매우 적은 최고액 또는 최저액으로 인해 평균액이 많이 상승 또는 감소하는 경우 평균액으로 중심 경향을 파악하기에 적절치 않으므로 중앙액과 최빈액을 함께 조사하였다. 중앙액이란 사례를 순위대로 배열하여 사례수가 홀수인 경우에는 한 가운데에 위치한 사례의 액수를, 짝수인 경우에는 한 가운데 위치한 두개 값의 평균액을 말한다. 최빈액은 빈도수가 가장 많은 값을 말한다.

청구액과 인용액은 원고가 한 명이 아닌 다수인 경우 각 원고의 청구액이나 인용액을 모두 합산한 금액 기준이며, 피고가 다수인 경우 피고를 매체별로 구분한 매체별 금액 기준이다. 또 피고가 언론인인 경우 언론인이 소속된 매체에 합산했다.

분석결과, 청구액 평균은 약 2억 4,773만원이었고, 중앙액과 최빈액은 각 1억원이었으며, 최저액은 10원이었다. 최저 청구액은 지울 스님이 지구 생태환경을 무시한 인간 편의의 사고에 경종을 울리는 차원에서 상징적으로 화폐 최소단위인 10원을 청구한 사건이다.⁹⁾

1억원 이상인 억대의 청구가 전체 손해배상청구 115건 중 61건을 차지해 53.0%나 되었고, 최고 청구액은 30억원이었다. 최고 청구액은 주택 및 상가건설업 등을 영위하는 종합건설회사인 원고가 분양전환 지연을 통해 가격을 부풀려 폭리를 취하고 있으며, 공정거래위원회의 권고를 무시하고 임대료를 매년 5%씩 인상해 왔다는 내용의 기사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이었다.¹⁰⁾

〈표 3-2〉 청구액

청구액 (원) 빈 도	평균액	중앙액	최빈액	최저액	최고액
115	247,731,314	100,000,000	100,000,000	10	3,000,000,000

3. 인용액

손해배상 인용액 평균은 2,348만원, 중앙액은 800만원

손해배상청구가 인용되어 금전배상이 이루어진 54건에 대해 인용액을 살펴보면, 평균액은 2,348만원, 중앙액은 800만원으로 평균액이 중앙액의 3배에 가까웠다. 법원이 가장 빈번하게 선고한 손해배상액인 최빈액은 500만원이었다.

위자료 인용 최고액은 2억 7,288만원으로 원고 회사가 멜라민 검출이 의심돼 국내 유통이 중단된 분유를 베트남에 수출한 것으로 밝혀져 파문이 예상된다고 보도한 사건이었다.¹¹⁾

참고로, 손해배상청구가 인용된 54건 중 항소심 판결은 10건이고 상고심 판결은 8건이었다. 위 상소심 18건을 대상으로 상소심 재판부가 원심에서 인용한 손해배상액을 증액 또는 감액하여 인용한 사실이

9) 서울중앙지방법원 2009. 9. 2. 선고 2008가합36218 판결

10) 서울남부지방법원 2009. 1. 23. 선고 2008가합4811 판결

11) 서울남부지방법원 2009. 9. 29. 선고 2009가합2126, 2009가합2133(병합) 판결

있는지를 살펴보았다. 그 결과, 18건 중 원고 원심 패소판결을 반복하여 손해배상을 새롭게 명한 1건을 제외한 17건의 경우, 원심 인용액을 감액하여 인용한 경우는 1건으로 나타났다. 반면 원심 인용액보다 증액하여 인용한 경우는 2건이 있었다. 나머지 14건의 경우 모두 원심 인용액을 그대로 인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 3-3〉 인용액

인용액 (원) 빈 도	평균액	중앙액	최빈액	최저액	최고액
54	23,484,499	8,000,000	5,000,000	10	272,881,472

4. 인용액 분포

손해배상 인용액은 5백만원 이하가 37.0%로 가장 많아

손해배상액 분포를 보면 5백만원 이하가 37.0%로 가장 많았으며, 그 다음으로 배상액이 5백만원을 초과 하되 1천만원 범위 내인 경우가 27.8%로 나타났다.

〈표 3-4〉 손해배상 인용액 분포

인용액 (원) 빈 도	5백만 이하	5백만초과 ~1천만	1천만초과 ~2천만	2천만초과 ~3천만	3천만초과 ~5천만	5천만초과 ~1억	1억초과
54 (100.0)	20 (37.0)	15 (27.8)	6 (11.1)	6 (11.1)	4 (7.4)	1 (1.9)	2 (3.7)

※ ()안의 숫자는 %

5. 침해유형별 인용액

신용훼손으로 인한 손해배상 인용액 평균이 1억 6,144만원으로 가장 높아

법원이 침해를 인정한 인격권 유형별로 손해배상액을 집계해 본 결과, 명예훼손 단독의 경우 평균은 1,419만원, 중앙액은 800만원이었다. 그리고 신용훼손으로 인한 손해배상 인용액의 평균이 1억 6,144만원으로 가장 높았다.

사생활 단독 침해한 사안으로는 탈북자의 신원을 추지할 수 있게 하여 법원이 언론사로 하여금 피해자와 가족들에게 3천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한 1건이 있었다.

〈표 3-5〉 손해배상사건 침해유형별 인용액

침해 유형	인용 빈도	평균(원)
명 예	37	14,189,189
명 예 / 음성	1	11,000,000
명 예 / 초상	1	5,000,000
명 예 / 초상 / 사생활	2	10,000,000
신 용	4	161,440,736
초상 / 사생활	2	4,000,000
초상 / 성명	1	5,000,000
사 생 활	1	30,000,000
사생활 / 성명	2	700,000
저 작 권	1	5,000,000
기 타	2	6,000,000
합 계	54	23,484,499

6. 원고유형별 승소율 및 인용액

일반인의 인용액 평균은 840만원, 공인의 인용액 평균은 1,488만원

원고 유형별로 인용액의 평균을 보면, 개인의 경우 일반인이 840만원으로 공직자와 공적인물을 합산한 공인의 인용액 평균인 1,488만원보다 648만원 적었다. 공인 중에는 공직자의 인용액 평균이 1,970만원이었고, 공적인물은 683만원이었다.

〈표 3-6〉 손해배상사건 원고유형별 승소율 및 인용액

원고유형	소송빈도	원고일부승소	원고승소율(%)	인용액 평균	
개 인	공직자	14	10	71.4	19,700,000
	공적인물	16	6	37.5	6,833,335
	일반인	51	26	51.0	8,400,000
단 체	공공단체	2	1	50.0	10,000,000
	정당	1	1	100.0	30,000,000
	일반단체	7	1	14.3	10,000,000
	시민단체	3	0	0.0	0
	종교단체	1	0	0.0	0
	기업	10	8	80.0	94,595,368
	언론사	6	1	16.7	5,000,000
합 계	115	54	47.0	23,484,499	

〈표 3-7〉 공적인물의 손해배상사건 승소율 및 인용액

공적인물 유형	소송빈도	원고일부승	원고승소율(%)	인용액 평균
정치인	1	0	0.0	0
언론인	1	0	0.0	0
기업가	2	1	50.0	10,000,000
기타 유명인	12	5	41.7	6,200,002
합 계	16	6	37.5	6,833,335

7. 매체유형별 원고승소율 및 인용액

매체유형별 원고승소율은 중앙종합일간지, 인터넷매체 상대가 비교적 높아

매체유형별 손해배상청구사건 원고 승소율은(빈도가 2건 이하는 제외) 중앙종합일간지가 66.7%로 가장 높았고, 그 다음으로 인터넷매체가 65.2%로 나타났다.

인용액 평균 현황은 일반경제지가 2억 7,288만원으로 가장 높았고, 특수일간지 5,000만원, 인터넷매체 2,873만원, 월간지 2,567만원 순이었다.

〈표 3-8〉 손해배상사건 매체유형별 원고승소율 및 인용액

매체유형	인용액	빈도	원고일부승	원고승소율(%)	평균액
일 간	중앙종합	30	20	66.7	13,270,001
	지역종합	6	1	16.7	8,000,000
	일반경제	1	1	100.0	272,881,472
	특수일간	2	1	50.0	50,000,000
	무료종합	1	1	100.0	3,000,000
	소 계	40	24	60.0	24,970,062
방 송	중 앙	24	6	25.0	13,666,667
	지 방	1	0	0.0	0
	민 방	3	1	33.3	20,000,000
	케 이 블	1	1	100.0	3,000,000
	소 계	29	8	27.6	13,125,000
주 간	10	3	30.0	17,000,000	
월 간	9	3	33.3	25,666,667	
뉴스통신	4	1	25.0	5,000,000	
인 터 넷	23	15	65.2	28,725,431	
합 계	115	54	47.0	23,484,499	

※ ()안의 숫자는 %

8. 공동 피소된 언론인에 대한 판결 결과

공동 피소된 언론인 승소율은 57.4%로 전체 피고승소율보다 약간 높아

손해배상청구사건 115건 중 언론인이 공동 피고로 제소된 사건은 61건(53.0%)으로 절반이상을 차지했다. 이 중 언론인이 면책되어 승소한 빈도는 35건으로 언론인 승소율은 57.4%였다. 이는 손해배상청구사건 전체 피고승소율 53.0%보다 약간 높은 수준이다.

〈표 3-9〉 손해배상사건 피고 언론인 승소 여부

청구빈도	언론인 피고 사건	처리 결과	
		언론인 승	언론인 패
115	61 (100.0)	35 (57.4)	26 (42.6)

※ ()안의 숫자는 %

9. 손해배상청구 기각사유

진실성이나 상당성과 관련해서 기각한 경우가 67.2%

언론사건에서는 다른 민사사건과 달리 판례와 학설에 의해 보도의 공익성과 진실성 또는 공익성과 상당성이 인정될 경우 위법성을 조각하고 있다. 손해배상 기각 사유 중 가장 빈번한 것도 바로 이러한 이유로 위법성이 조각된 경우이다.

2009년 손해배상청구 중 기각된 사건의 기각사유를 살펴본 결과, 위와 같은 사유인 보도의 진실성이나 상당성과 관련되어 기각한 경우가 41건(67.2%)이었다.

또, 기각 사유에 피해자가 특정되지 않았거나 사실의 적시가 아닌 의견표명으로서 적법한 것이라고 판단한 것과 관련하여 기각한 경우가 각 8건으로 나타났다. 그 외에 이익형량에 의해 피해자의 법익보다 공공의 이익이 우선한다고 판단하여 기각한 경우가 5건이었다.

기타사유를 살펴보면, 광우병 보도와 관련하여 일반 시청자가 제기한 사건에 대해 인과관계를 부정해 기각한 경우¹²⁾, 이미 조정을 통해 분쟁이 해결되었다고 판단하여 손해배상채권이 소멸했다고 기각한 경우¹³⁾가 있었다.

12) 서울남부지방법원 2009. 2. 17. 선고 2008가합17497 판결

13)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09. 11. 5. 선고 2008가합8543 판결

〈표 3-10〉 손해배상 기각사유

손해배상 기각사유	빈 도	비 율(%)
진실성	17	27.9
상당성	11	18.0
상당성/불특정	1	1.6
상당성/적법의견	2	3.3
진실성/상당성	10	16.4
적법의견	6	9.8
불특정	7	11.5
이익형량에 의한 공익 우선	5	8.2
기 타	2	3.3
합 계	61	100

제5장 정정보도 및 반론보도청구사건

1. 정정보도청구사건의 처리결과

정정보도청구사건의 원고승소율은 61.2%

정정보도청구사건 49건 중 원고가 일부승소한 사건은 30건으로 원고승소율은 61.2%로 나타났다. 이 중 정정보도를 단독으로 청구한 빈도는 3건에 불과했으며, 대부분은 손해배상과 병합하여 청구하였다.

〈표 4-1〉 정정보도청구사건 처리결과

청구건수	처 리 결 과	
	원고일부승	원 고 패
49 (100.0)	30 (61.2)	19 (38.8)

※ ()안의 숫자는 %

2. 정정보도청구 기각사유

진실성이나 상당성과 관련해서 기각한 경우가 88.9%로 대다수를 차지

정정보도청구권은 진실성, 진실성/상당성으로 인해 기각한 경우가 16건(88.9%)으로 대다수를 차지했다. 참고로 기각된 18건 외에 부제소합의로 인해 각하된 사건이 1건 있었다.

〈표 4-2〉 정정보도 기각사유

정정보도 기각사유	빈 도	비 율(%)
진 실 성	13	72.2
진실성/상당성	3	16.7
적법의견	1	5.6
불 특 정	1	5.6
합 계	18	100

3. 반론보도청구사건의 처리결과

반론보도청구사건의 원고승소율은 66.7%

반론보도청구사건 7건 중에 예비적 청구로 심리를 받지 않은 1건을 제외한 6건 중 원고가 일부승소한 사건은 4건으로 원고승소율은 66.7%로 나타났다. 이 중 반론보도를 단독으로 청구한 사건은 1건에 불과했으며, 나머지는 정정보도나 손해배상과 병합하여 청구하였다.

〈표 4-3〉 반론보도청구사건 처리결과

청구건수	처 리 결 과	
	원고일부승	원 고 패
6 (100.0)	4 (66.7)	2 (33.3)

※ ()안의 숫자는 %

4. 반론보도청구 기각사유

반론보도청구 6건 중 기각된 사건은 2건으로, 법원은 요구하는 반론보도문이 사실에 반하거나 요구하는 반론보도문이 지엽말단적이어서 정당한 이익이 없다며 기각하였다.

5. 판결주문에 따른 정정보도등의 형식

2009년 법원에서 정정보도, 반론보도, 추후보도(이하 “정정보도등”이라 한다)를 명한 사건은 34건이다. 이를 매체별로 분류하면 일간신문이 15건, 인터넷매체가 8건, 월간지와 방송이 각 5건 등으로 나타났고, 인용한 보도별로 분류하면 정정보도는 29건, 반론보도는 3건, 정정보도 및 반론보도가 1건¹⁴⁾, 추후보도가 1건이었다.

언론중재법 제27조(재판) 제2항은 법원은 정정보도등을 명하는 때에는 보도문의 내용·크기·회수·계재부위 또는 방송순서 등을 정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판결주문 상의 보도문의 보도위치, 보도제목, 보도본문 길이 등을 조사해 보았다.

14) 서울고등법원 2009. 6. 17. 선고 2008나80595 판결로, 법원은 정정보도가 필요한 내용에 대해서는 정정보도를, 반론보도가 필요한 내용에 대해서는 반론보도를 각각 명하였다.

〈표 4-4〉 매체별 정정보도등의 인용빈도

매체유형	정정보도	반론보도	정정 및 반론	추후보도	계
일간신문	13	2			15
주간신문	1				1
월간지	4	1			5
방송	3		1	1	5
인터넷	8				8
합계	29	3	1	1	34

가. 정정보도등의 보도위치

원보도와 같은 지면(프로그램)에 보도하도록 명한 경우가 79.4%
비중있는 위치에 보도하도록 명한 경우가 23.5%

정정보도등의 위치가 원보도와 같은 지면이나 프로그램에 보도하도록 명한 경우가 27건(79.4%)이었고, 원보도와 다른 지면이나 프로그램에 보도하도록 명한 경우가 2건(5.9%)이었다. 그 밖에 주문에 따로 명시하지 않은 경우가 5건(14.7%)으로 나타났다. 참고로 언론중재법 제15조(정정보도청구권의 행사) 제6항은 정정보도를 원보도와 동일한 효과를 발생시킬 수 있는 방법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보도위치는 정기간행물의 경우 1면이 3건, 방송의 경우 첫머리가 3건, 인터넷매체의 경우 제목과 내용을 모두 초기화면에 게시하게 한 것이 2건으로 총 8건(23.5%)이 비중있는 위치에 보도하도록 명하였다.

〈표 4-5〉 정정보도등의 보도지면(프로그램)

보도지면(프로그램)	빈도	비율(%)
원보도문과 같은 지면(프로그램)	27	79.4
원보도문과 다른 지면(프로그램)	2	5.9
명시하지 않음	5	14.7
합계	34	100

〈표 4-6〉 정정보도등의 보도위치

구분	보도위치	빈도	비율(%)
정기간행물	1면	3	8.8
	1면 외	13	38.2
방송	첫머리	3	8.8
	끝	1	2.9
인터넷	제목과 내용 모두 초기화면에 게시	2	5.9
	제목은 메인에 게시하고 내용은 하이퍼링크	5	14.7
공통	명시하지 않음	7	20.6
합계		34	100

나. 정정보도등의 보도제목, 보도본문 길이

**보도제목은 '정정보도문' 이나 '반론보도문' 형식이,
보도본문의 길이는 300자 초과 400자 이하가 가장 많아**

보도제목은 '정정보도문' 이나 '반론보도문' 형식으로 달도록 한 것이 16건(47.1%)으로 가장 많았다. 그 다음으로 '…에 대한 정정보도문' 형식이 8건(23.5%), '바로잡습니다' 형식이 5건(14.7%), '일반 기사의 제목' 형식이 4건(11.8%) 등의 순이었다.

보도본문의 길이는 글자 수 기준으로 300자 초과 400자 이하가 11건(32.4%)으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 700자 초과가 8건(23.5%), 300자 이하가 7건(20.6%) 등의 순이었다.

〈표 4-7〉 정정보도등의 보도제목

보도제목	빈 도	비 율(%)
정정보도문	13	38.2
반론보도문	2	5.9
…에 대한 정정보도문	8	23.5
정정보도문/반론보도문	1	2.9
바로잡습니다	5	14.7
일반 기사의 제목	4	11.8
알 림	1	2.9
합 계	34	100

〈표 4-8〉 정정보도등의 보도본문 길이

보도본문 길이	빈 도	비 율(%)
300자 이하	7	20.6
301~400자	11	32.4
401~500자	3	8.8
501~600자	2	5.9
601~700자	3	8.8
700자 초과	8	23.5
합 계	34	100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과 법원 판결 비교

1. 조정신청 비율

3건 중 1건은 위원회의 조정을 거친 것으로 나타나

매체별 소송건 128건을 청구권별로 환산한 183건을 대상으로 위원회의 조정을 거친 사실이 있는지의 여부를 살펴, 2009년 분석대상 판결의 언론조정신청 비율을 산정해 보았다.

2009년 분석대상 판결 중 위원회의 조정을 거친 사건의 비율은 30.6%로 대략 3건에 1건은 위원회의 조정을 거친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청구권별로 보면, 반론보도청구가 57.1%로 가장 높았고, 정정보도청구가 40.8%, 손해배상청구사건이 26.4%로 각각 나타났다.

〈표 5-1〉 언론조정신청 비율

청 구 명	소송빈도	조정신청건수	조정신청비율(%)
정 정	49	20	40.8
반 론	7	4	57.1
추 후	1		
손해배상	121	32	26.4
기사삭제	3		
보도금지	2		
합 계	183	56	30.6

2. 조정을 거친 사건의 위원회 조정결과와 법원 판결결과 비교

조정에 같음하는 결정이 내려진 사건의 원고 일부승소율은 66.7%

분석대상 판결 중 위원회 조정을 거친 사건 56건을 대상으로 조정결과와 판결 결과를 비교해 보았다. 먼저 위원회에서 조정에 같음하는 결정이 내려진 15건의 경우, 10건(66.7%)은 원고 일부승소했고 5건(33.3%)은 원고 패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피신청인이 이의신청한 경우는 모두 원고 일부승소하였고,

양자가 이의신청한 경우도 원고 일부승소가 75.0%로 높았다. 오히려 신청인이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에 대해 이의신청한 사건의 경우 모두 원고 패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조정불성립 결정이 내려졌던 29건의 경우 14건이 원고 일부승소하였고, 15건은 패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 5-2〉 언론중재위원회와 법원의 처리결과 비교

위원회 조정결과		조정 결과	계	원고일부승	원고패
직권조정결정		신청인 이의신청	4		4
		피신청인 이의신청	7	7	
		신청인, 피신청인 이의신청	4	3	1
		조정 성립	2		2
		조정불성립	29	14	15
		기 각	2		2
		취 하	8	2	6
		합 계	56	26	30

3. 손해배상청구사건의 위원회 조정액과 법원 인용액 비교

위원회의 조정액 평균은 법원의 인용액 평균에 비해 약 1/6.5 수준

2009년 한 해, 위원회가 처리한 손해배상청구사건 중 조정성립 등을 통해 금전배상이 이루어진 사건의 조정액과 법원에서 선고한 손해배상청구사건 인용액을 비교해 보았다.

분석결과, 위원회 조정액 평균은 약 359만원으로 법원 인용액 평균 2,348만원의 15.3%로 법원의 인용액에 비해 약 1/6.5 수준에서 결정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위원회 조정액의 중앙액은 200만원으로 법원 인용액의 중앙액 800만원의 1/4 수준이었다.

참고로, 2009년 한 해 위원회가 중재결정을 한 10건의 손해배상청구사건 중재액을 법원 인용액과 비교해 본 결과, 위원회 중재액의 평균액 약 163만원은 법원 인용액의 평균액 대비 6.9% 수준이었고, 중재액의 중앙액 175만원은 법원 인용액의 중앙액 대비 21.9%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즉, 위원회 중재액의 평균액은 법원 인용액에 비해 약 1/15, 중재액의 중앙액은 법원 인용액에 비해 중앙액의 약 1/4.5 수준임을 의미한다.

그러나 손해배상액 산정은 사안의 성격뿐만 아니라 이를 둘러싼 제도적 환경 등에 따라 다양한 요인들이 개입하므로 위원회의 조정액과 법원의 인용액을 일률적으로 단순 비교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 다만 전체적인 추이를 살펴볼 목적으로 두 기관의 손해배상청구사건에 대한 인용액을 분석해 보았다.

<표 5-3> 손해배상청구사건의 위원회 조정액 및 중재액과 법원 인용액 비교

구분	빈도	평균액(원)	중앙액(원)	최빈액(원)	최저액(원)	최고액(원)
인용액	54	23,484,499	8,000,000	5,000,000	10	272,881,472
조정액	40	3,594,103	2,000,000	3,000,000	120,000	30,000,000
중재액	10	1,630,000	1,750,000	1,000,000	1,000,000	2,500,000

분석대상 판결목록(민사 108건)

(선고일 순)

번호	선고일자	판결번호	법원명	심급	청구명	사건피고명	결과
1	2009-01-09	2008가합10861	서울남부	1심	정정	한국방송공사	인용
2	2009-01-09	2008가합13778	서울남부	1심	정정/손배	(주)에스비에스	기각
3	2009-01-14	2008가합64077	서울중앙	1심	정정/손배	(주)중앙일보사 외 3인	인용
4	2009-01-14	2008나3229	광주고등	2심	손배	월간조선사 외 2인	기각
5	2009-01-14	2008나14093	서울고등	2심	손배	(주)조선일보사	인용
6	2009-01-16	2007가소297921	서울중앙	1심	손배	(주)동아일보사 외 1인	인용
7	2009-01-23	2008가합15224	서울남부	1심	정정/손배	(주)문화방송 외 2인	기각
8	2009-01-23	2008가합4811	서울남부	1심	정정/손배	(주)아시아경제신문사 외 10인	인용
9	2009-01-30	2008가합11498	서울서부	1심	정정/손배	한겨레신문 (주) 외 2인	기각
10	2009-01-30	2008다90507	대법원	3심	손배	(주)문화방송	기각
11	2009-01-30	2008다79647	대법원	3심	정정/반론/손배	(주)경인일보 외 2인	기각/인용/기각
12	2009-01-30	2006다60908	대법원	3심	손배	(주)조선일보사 외 2인	기각
13	2009-02-06	2007가단301611	서울중앙	1심	손배	(주)한겨레신문	인용
14	2009-02-06	2008가합10501	서울서부	1심	정정	한겨레신문 (주)	기각
15	2009-02-06	2008가합10518	서울서부	1심	손배	한겨레신문 (주) 외 1인	기각
16	2009-02-10	2008가단10984	서울동부	1심	손배	(주)한국세정신문사 외 1인	인용
17	2009-02-12	2008가단23285 2008가단35554(병합)	울산지방	1심	손배	울산세일일보 (주)	기각
18	2009-02-13	2008가합8690	서울서부	1심	손배	(주)일요서울신문사	기각
19	2009-02-17	2008가합17497	서울남부	1심	손배	(주)문화방송 외 2인	기각
20	2009-02-26	2008다27769	대법원	3심	손배	(주)경남신문사 외 1인	인용
21	2009-03-18	2008나35298	서울고등	2심	손배	(주)문화일보 외 3인	기각
22	2009-03-18	2008나329	광주고등	2심	손배	이○○ 외 2인	기각
23	2009-04-01	2008가합78922	서울중앙	1심	손배	(주)노컷뉴스 외 3인	기각
24	2009-04-09	2005다65494	대법원	3심	손배	(주)조선일보사	인용
25	2009-04-14	2009가합151	서울남부	1심	손배	(주)에스비에스	기각
26	2009-04-15	2008나63484	서울고등	2심	정정/손배	(주)문화방송	인용
27	2009-04-16	2008다53812	대법원	3심	손배	엔에이치엔 (주) 외 2인	인용
28	2009-04-16	2008가단62492	수원지방	1심	손배	(주)뉴스리더 외 3인	기각
29	2009-04-21	2008가합16890	서울남부	1심	정정/반론	(주)문화방송	기각
30	2009-04-21	2007가단83352	서울서부	1심	손배	씨제이티브이엔 (주) 외 1인	인용
31	2009-04-30	2008나11233	서울남부	2심	손배	한국방송공사	기각
32	2009-04-30	2008나11219	서울남부	2심	손배	(주)연합뉴스	기각
33	2009-05-08	2006가단454525	서울중앙	1심	손배	(주)독립신문사 외 3인	인용
34	2009-05-12	2008가합23003	서울남부	1심	정정/손배	(주)구로타임즈 외 1인	기각
35	2009-05-12	2009나2155	서울중앙	2심	손배	(주)문화방송	기각
36	2009-05-14	2009다14548	대법원	3심	손배	(주)조선일보사	인용
37	2009-05-19	2008가합20523	서울남부	1심	정정/반론	한국방송공사	기각
38	2009-05-19	2009가합311	서울남부	1심	손배	(주)문화방송	인용
39	2009-05-20	2008나74545	서울고등	2심	손배	(주)문화방송 외 3인	기각
40	2009-05-27	2008가합11033	부산지방	1심	정정/반론/손배	(사)목요학술회 외 2인	기각/인용/기각

번호	선고일자	판결번호	법원명	심급	청구명	사건피고명	결과
41	2009-05-28	2007다354	대법원	3심	손배	(주) 뉴시스	인용
42	2009-05-29	2008가합40668	서울중앙	1심	손배	대한민국 외 1인	인용
43	2009-06-03	2008나80052	서울고등	2심	정정/손배	(주) 문화방송	인용
44	2009-06-03	2007가합37344	서울중앙	1심	정정/손배	(주) 월간조선사 외 5인	인용
45	2009-06-09	2009가합6395	서울남부	1심	정정	한국방송공사	각하
46	2009-06-11	2008나41016	서울중앙	2심	손배	(주) 중앙일보사	인용
47	2009-06-17	2008나72044	서울고등	2심	정정/손배	(주) 씨비에스아이 외 4인	인용
48	2009-06-17	2008나80595	서울고등	2심	정정/반론	(주) 문화방송	인용
49	2009-06-17	2008가합96333	서울중앙	1심	정정/손배	(주) 메트로신문사 외 1인	인용
50	2009-06-17	2008나89363	서울고등	2심	손배	(주) 에스비에스 외 2인	기각
51	2009-06-18	2008나17595	부산고등	2심	정정/손배	마산문화방송 (주) 외 1인	기각
52	2009-06-24	2008가합40828 2008가합62859 (병합)	서울중앙	1심	정정/손배	(주) 월간조선사 외 1인	인용
53	2009-06-24	2009가합13694	서울중앙	1심	반론	(주) 문화일보	인용
54	2009-07-07	2008가합18438	서울남부	1심	손배	한국방송공사 외 1인	기각
55	2009-07-08	2008가합104388	서울중앙	1심	정정/손배/보도금지	(주) 머니앤밸류 외 1인	기각
56	2009-07-15	2009나17150	서울고등	2심	손배	(주) 문화방송 외 8인	기각
57	2009-07-16	2008가단108815	서울남부	1심	손배	(주) 미디어오늘 외 1인	기각
58	2009-07-17	2009가합622	서울동부	1심	정정/손배	(주) 불링코리아 외 2인	기각
59	2009-07-17	2009나125	광주고등 전주재판부	2심	정정/손배	(주) 전주방송 외 3인	기각
60	2009-07-22	2008가합93365	서울중앙	1심	손배	(주) 동아일보사 외 1인	기각
61	2009-07-23	2009가단2437	서울중앙	1심	손배	(주) 조선일보 외 3인	기각
62	2009-07-23	2008다18925	대법원	3심	손배	고○○	인용
63	2009-08-11	2008가단80607	서울중앙	1심	손배	(주) 세계일보 외 2인	기각
64	2009-08-12	2009가합957	서울중앙	1심	정정/손배	(주) 동아일보	기각
65	2009-08-19	2008가합92560	서울중앙	1심	손배	(주) 조선일보사 외 1인	인용
66	2009-08-19	2008나91908	서울고등	2심	추후/손배	(주) 문화방송 외 8인	인용
67	2009-08-19	2009나14274	서울고등	2심	정정/손배	(주) 중앙일보사 외 2인	인용
68	2009-08-20	2008가합7736	광주지방	1심	손배	대한민국 외 4인	인용
69	2009-08-20	2009다39882	대법원	3심	손배	한국방송공사	기각
70	2009-08-20	2009다39899	대법원	3심	손배	(주) 연합뉴스	기각
71	2009-08-20	2009다41038	대법원	3심	손배	(주) 문화방송	기각
72	2009-09-01	2008가합19783	서울남부	1심	손배	한국방송공사	인용
73	2009-09-02	2008가합36218	서울중앙	1심	정정/손배	(주) 조선일보	인용
74	2009-09-09	2008가합15914	서울중앙	1심	정정/손배	(주) 프레시안 외 1인	인용
75	2009-09-09	2009가합11490	서울중앙	1심	손배	조선일보사 외 1인	인용
76	2009-09-10	2007다71	대법원	3심	손배	(주) 문화방송 외 1인	기각
77	2009-09-16	2008나96088	서울고등	2심	정정/손배	(주) 강원도민일보 외 2인	인용/기각
78	2009-09-22	2009가단23128	부산지방	1심	손배	(주) 케이엔엔	기각
79	2009-09-24	2008가단202834	서울중앙	1심	손배	(주) 동아일보	인용
80	2009-09-29	2009가합2126 2009가합2133(병합)	서울남부	1심	정정/손배	파이낸셜뉴스신문 (주) 외 2인	인용
81	2009-09-30	2008가합111331	서울중앙	1심	정정/손배	(주) 조선일보사	인용
82	2009-09-30	2008나103825	서울고등	2심	정정/손배	(주) 동아일보사 외 4인	인용

번호	선고일자	판결번호	법원명	심급	청구명	사건피고명	결과
83	2009-10-06	2008가단18709	창원지법 진주지원	1심	손배	황○○ 외 2인	기각
84	2009-10-14	2009가단2413	서울중앙	1심	손배	김○ 외 2인	인용
85	2009-10-14	2009가합41071	서울중앙	1심	손배/기사삭제	뉴스앤조이 외 1인	인용
86	2009-10-14	2009나8972	서울고등	2심	손배	(주) 중앙일보사 외 3인	인용
87	2009-10-15	2009다55877	대법원	3심	손배	(주) 중앙일보사	인용
88	2009-10-29	2009다49766	대법원	3심	정정/손배	(주) 문화방송	기각/인용
89	2009-11-05	2008가합8543	수원지법 안산지원	1심	손배	(주) 안산타임즈 외 1인	기각
90	2009-11-05	2009가단2390	서울중앙	1심	손배	박○○ 외 1인	기각
91	2009-11-05	2009가단2406	서울중앙	1심	손배	(주) 동아일보사 외 1인	기각
92	2009-11-10	2009가합9424	서울남부	1심	정정/손배	(주) 월간조선사 외 3인	인용/기각
93	2009-11-18	2009가합76176	서울중앙	1심	정정/손배	(주) 한국일보사 외 2인	인용/기각
94	2009-11-24	2008가단62527	서울동부	1심	손배	김○○	인용
95	2009-11-25	2008가합129936	서울중앙	1심	손배	(주) 월간조선사 외 1인	기각
96	2009-11-25	2009나15239	서울고등	환송후심	손배	(주) 조선일보사 외 2인	기각
97	2009-11-26	2009다74502	대법원	3심	정정/손배	(주) 중앙일보사 외 2인	인용
98	2009-12-01	2009가합9837	서울남부	1심	손배	(주) 아파트라이프 외 1인	인용
99	2009-12-02	2008가합84040	서울중앙	1심	정정/손배	(주) 참언론 외 4인	인용
100	2009-12-02	2009나4046	부산고등	환송후심	손배	(주) 경남신문사 외 1인	인용
101	2009-12-03	2009나49003	부산고등	2심	정정/반론/손배	(사) 목요학술회 외 2인	인용
102	2009-12-04	2008가합992	수원지법 여주지원	1심	손배	(주) 하나로신문 외 2인	인용
103	2009-12-11	2009가소66132	인천지법 부천지원	1심	손배	(주) 뉴스스 인천 외 1인	기각
104	2009-12-16	2009가합62320	서울중앙	1심	정정/손배/기사삭제	조갑제	인용/인용/기각
105	2009-12-16	2009가합122758 2009가합122765(병합)	서울중앙	1심	손배/기사삭제	(주) 한국교회신문사 외 1인	기각
106	2009-12-16	2009가합69079	서울중앙	1심	정정/손배	(주) 문화일보 외 2인	인용
107	2009-12-23	2009가합57878	서울중앙	1심	정정/손배	(주) 조선일보사	기각
108	2009-12-23	2007나54421 2007나54438(병합)	서울고등	2심	손배	한국방송공사	기각